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 - 65호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을 포함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임실군민의 건강 증진과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통합지원 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실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상생활돌봄,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지원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인력 배치, 기반시설 확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자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관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실군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전담조직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읍·면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업무 담당국장, 보건의료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임실순창 지사장 등 전문기관의 우리 지역 담당 지사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3. 지역 내 사회복지·보건·주거·정신건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통합지원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또는 민간 인사
5.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돌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추가 위촉 및 조정
2.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연계 체계 구축
3.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신설한다.

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업무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임실군 지역 들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조사자 또는 통합지원 제공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